

결 정

2018 - 2039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1. 朝鮮日報 발행인 홍 준 호
2.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3.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4. 한겨레 발행인 양 상 우

주 문

朝鮮日報 2018년 2월 5일자 C5, C6, C7, C8면 「제약」·「식품」 제목의 특집면, 경향신문 2월 23일자 26면 「금융특집」 제목의 특집면, 서울신문 2월 27일자 17면 「재테크 특집」 제목의 특집면, 한겨레 2월 28일자 2, 3, 4, 5, 6, 7면 「5G/이노베이션」 제목의 특집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 유

朝鮮日報, 경향신문, 서울신문, 한겨레는 제약, 금융, 재테크, 5G 관련 특집면을 제작하면서 면 상단에 ‘advertorial page’ 표기를 넣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기사에 기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 체제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년 3월 14일

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

위 원 장 김 용 담

위	원	정	송	호	정우
		장	명	국	장명국
		박	재	현	박재현
		장	인	철	장인철
		김	규	식	김규식
		강		희	강희
		하	윤	수	하윤수
		김	영	모	김영모
		박	미	경	박미경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